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5-35호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토지등소유자(추진주체)측으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한 사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서구 등촌2동 515-44 일대

나. 면 적 : 19,627.8㎡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2027. 10. 1.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2031. 2. 1.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등촌2동 모아타운 제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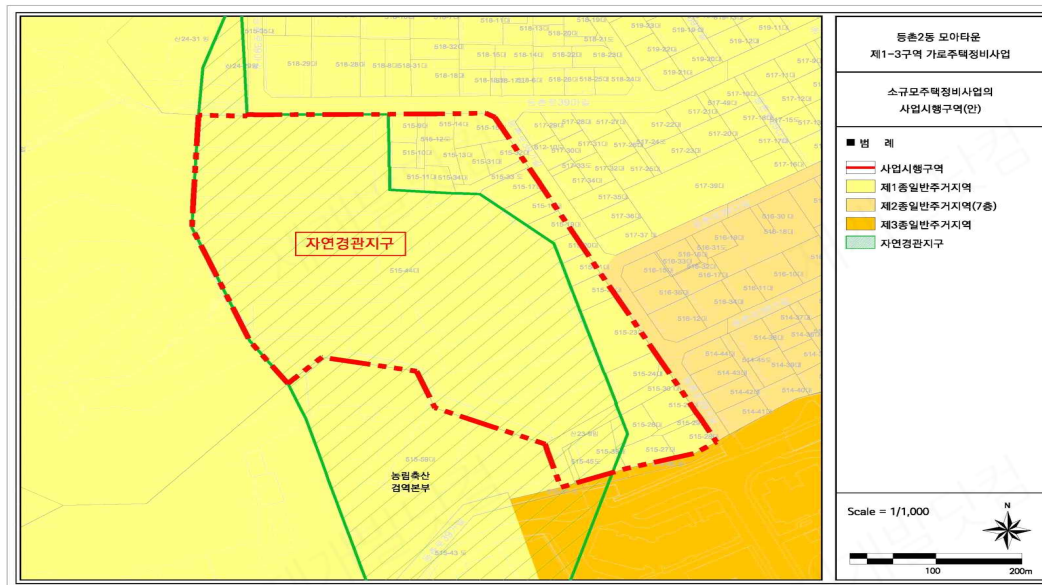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9길 18, 1층(등촌동)

5. 조합설립 인가일: 2025. 4. 24.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3(행위 제한 등)]

7. 지형도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재생과(☎02-2600-68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